

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5장 재해보상

제90조 【재해보상】

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16장 입소자 관리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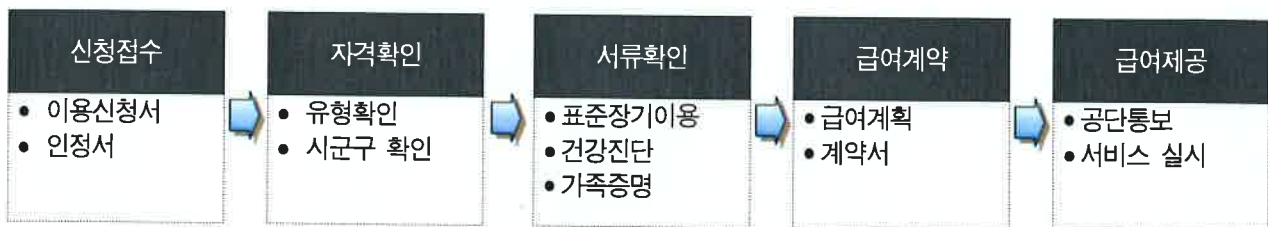
제1절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

제91조 【입소정원 및 대상】

- ①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65명이며, 「노인복지법시행규칙」에 따라 관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.
- ② 이용대상은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
제92조 【입소모집 및 이용절차】

-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, 블로그와 홍보지,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, 지역사회 홍보, 이용자,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
- ②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


제2절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

제93조 【계약의 목적】

-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

체결한다.

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94조 【계약기간】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
-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-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95조 【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】

[권리]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3.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4.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

권리

8.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[의무]

1.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5.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3절 이용료

제96조 【월 이용료】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
-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
- ④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
- 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
제97조 【비용의 개정】

-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 *변경방법* ✓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 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 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 4.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.
-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(보호자)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-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 *변경절차* ✓
1.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,
 2.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(또는 보호자)안내하며,
 3.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98조 【이용료 납부】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9조 【채무의 이자 및 이행】

입소인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 조항의 반환금에서 공제하며, 제86조에 의한 월 이용료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년15% 연체이자를 가산, 전 조항의 반환금에서 공제하고 입소비의 반환금이 부족할 때에는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병 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.

제 4절 서비스 내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제100조 【센터의 관리운영】

- ① 센터는 센터장 및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수급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.
- ② 센터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센터가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.

제101조 【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】

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1. 신체활동지원
2. 일상생활지원
3. 정서지원
4. 인지활동지원
5. 여가활동지원
6.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

③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제102조 【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】

① 수급자가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센터가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센터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센터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.

② 수급자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센터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

제103조 【식 사】

① 센터는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2식과 1일 1회의 간식을 수급자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 (당뇨식, 저염식, 유동식)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② 센터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의 직계가족과 친인척은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은 30% ~ 50% 경감할 수 있다.

③ 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경감대상자에게 비급여 항목을 50~100% 경감할 수 있다.

제 5절 계약의 해제 및 종료

제104조 【 계약해제 】

① 센터는 수급자가 다음의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이용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, 부정한 수단에 의해 계약하였을 때
 2. 월 부담금 또는 기타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
 3. 월 부담금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센터와 수급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센터가 인정했을 때
 4. 센터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97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
 5. 제85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
 6. 제99조, 제100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
 7.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
 8.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
 9. 수급자가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10.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
- ②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감이 계약해제를 통고 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제105조 【 수급자 계약해지 】

- ① 수급자는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센터가 정하는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해지서류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.
- ② 수급자는 전 항의 계약 해지일까지 거실을 센터에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.
- ③ 수급자가 계약 해지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지 않고 퇴소했을 때는 센터는 수급자의 퇴소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5일째 계약 해지일로 한다.